

## 뉴욕 타임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 인물 요건을 좁게 인정한 사례

Ilya Wolston v. Reader's Digest Association Inc., et al  
연방대법원에서 사건파기명령

### 판결의의

일찍이 미국 대법원은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에서 공무원(public official)은 상대방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 후 대법원은 공무원의 범위를 점차 확장하여 널리 공적 인물에까지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였다. 여기에 소개 하는 Reader's Digest 사건은 이러한 공적 인물의 범위의 무제한한 확장에 반대하고 일정한 제한을 가하려는 판결 중의 하나로서 그 의의가 있다.

### 사실개요

소련간첩에 대한 1957 년 및 1958 년간의 대배심(grand jury)의 조사결과, 신청인의 이모 내외가 간첩혐의로 구속되었고, 유죄가 인정되었다. 그 후 신청인도 대배심의 증인소환을 받고 수차례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갔다. 신청인은 정신상태를 이유로 증인소환을 하지 않도록 요구한 자신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증인소환영장(subpoena)에 한번 응하지 않았다. 이에 판사는 그에게 법정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밝히라는 이유개진명령(order to show cause)을 했다. 신청인은 곧바로 법원에 출두하여 증언을 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 후 법정모욕죄의 혐의가 인정되었다. 신청인은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수많은 기사가 워싱턴과 뉴욕의 신문에 보도되었지만, 그 후 잠잠해졌고, 판결 이후 신청인은 종전의 사생활로 되돌아가는데 대체로 성공하였다.

그런데 1974 년 피신청인 Readr's Digest 사는 피신청인 Barren 이 쓴 「KGB」 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그 책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간첩망과 그 활동연혁을 묘사한

것이였다. 그 후 다른 피신청인 회사들이 다시 이를 발견하였다. 그 책의 한 구절에서 신청인은 「확인된 미국내의 소련간첩」이며 「간첩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후 법정모욕죄로... 유죄확정」이라고 인용되었고, 부록에서는 신청인을 「미국 내 소련간첩」이라고 명단에 나열하였다. 신청인은 위 문구들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피신청인의 약식재판신청(motion for summary judgment)을 인용하면서, 신청인은 대배심의 증인소환에 불응하고 스스로 법정모욕죄로 처벌당함으로써 관심과 논평을 초래한 명백히 공공연한 성질의 논쟁에 개입하였고, 그럼으로써 그와 간첩조직과의 관계에 관하여 알고자 하는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공적 인물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수정헌법 제 1 조 때문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며, 현실적 악의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고 판시하였다. 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하였으나 연방대법원에서는 파기하였다.

## 판결요지

신청인은 명예훼손사건에 있어서의 공적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한 New York Times 사건의 현실적 악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1) 피신청인의 주장과 하급심의 인정과는 반대로, 신청인은 문제된 쟁점의 해결에 영향을 가할 목적으로 특정한 공공논쟁의 최전방에 스스로 나선 공적 인물이라 할 수 없다. 신청인이 공공의 관심을 끌고 법정모욕재판을 받을 것을 알면서 대배심의 증인소환에 임의로 불응하였다거나 또는 그의 행동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만으로는 그가 공적 인물이 된다 할 수 없다. 그의 소환불응은 공공의 관심을 끌고 대중에 영향을 가하기 위한 계획적 행동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그의 나쁜 건강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소환불응이 공공의 관심사에 대해 어떤 영향을 끼치려 했던 것이라거나 또 실제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범죄자의 유죄확정에 관련된 제한된 범위의 사항에 대한 논평에 있어서 그 범죄자는 당연히 공적 인물로 된다 할 수 없다. 이와 반대의 견해는 유죄확정자에 대하여 누구나 마구잡이로 명예훼손을 해도 좋다고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판결문

렌퀴스트(Rehnquist) 대법원판사가 법원의 견해를 밝혔다.

1974 년 피신청인 Reader's Digest 사는 피신청인 존 바른(John Barren)이 쓴 「소련 정보기관(KGB)의 비밀공작」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그 후 벤탐서적 등 피신청인이 된 수개의 출판사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를 전재 출판하였다). 그 책은 제 2 차세계대전 이후의 소련 간첩망과 그 활동연혁에 관해 묘사하고 있다. 그 책자는 캐나다와 호주의 왕실위원회와 영국 및 미국에 있어서의 공식 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자료를 인용하면서 신청인 일리아 월스톤(Ilya Wolsto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미국 내의 소련간첩으로 밝혀진 사람들 중에는 엘리자벳 벤틀리, 에드워드 조셉 피체랄드, 윌리암 루드윅 얼만, 윌리암월터 레밍톤, 프랭클린 빅터 리노, 주디스 코플론, 해리 골드, 데이빗 그린글래스, 줄리우스와 에델 로젠버그, 모튼 소벨, 윌리암 펄, 알프렛 딘 슬랙, 잭 소벨, 일리아 월스톤, 알프렛,마사스턴 등이 있다」 또한 위 「KGB」의 부록에는 신청인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월스톤, 일리아, 미국 내의 소련간첩」.

신청인은 「KGB」라는 책자 중 자신이 간첩혐의로 기소된 바 있고 또한 소련의 간첩이었다고 서술하는 부분은 허위로써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워싱턴의 연방지방법원(Federal District Court)에 위 「KGB」의 저자 및 발행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피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약식재판(청구자체가 이유없다고 하여 더이상의 심리를 않고 기각하는 것-역자 주)을 하였다. 지방법원의 판결이유는, 신청인은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 1 조에 따라 피신청인들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위 책자를 발행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 악의」란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 또는 허위여부에 대한 무분별한 무시라는 것이다(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84 S. Ct. 710, 11 L. Ed. 2d 686, 1964). 지방법원은 위에 인용된 KGB 부분이 신청인이 간첩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허위로 서술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피신청인에게 현실적 악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시하였다. 워싱턴의 연방고등법원(The Court of Appeals)도 이 결론을 유지하였다(188 U.S. App. D. C.185, 578 F. 2d427, 1978).

우리는 상고허가신청(certiorari)를 인용한 바 있고, 이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우리의 결론은 신청인이 명예훼손사건에 있어서의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결론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정헌법 제 1 조가 요구하는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의 현실적 악의 요건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1957 년 및 1958 년간 뉴욕에 있는 연방대배심(federal grand jury)은 미국 내의 소련간첩들의 활동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결과 신청인의 이모 내외, 즉 미라(Myra)와 잭 소블(Jack Soble) 부부가 1957 년 1 월 간첩혐의로 구속되었다. 소블 부부는 간첩혐의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고, 그 후 대배심의 조사가 소련간첩망의 다른 조직원에게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더 많은 구속, 유죄판결, 유죄인정 등이 뒤따랐다. 소블 부부가 구속되던 날 신청인은 워싱턴에 있는 자택에서 FBI 요원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신청인은 그 후 수개월 동안 워싱턴과 뉴욕에서 수 차례 더 조사를 받았으며, 대배심의 증인소환에 따라 여러 번 뉴욕으로 갔다.

그러나 신청인은 1958 년 7 월 1 일 법원에 출두하라는 대배심의 증인소환에 불응했다. 그전에 신청인은 자신의 정신적 압박을 이유로 조사를 받으러 뉴욕에까지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해달라고 탄원한 바 있다. 연방지방법판사는 7 월 14 일 신청인에게 그가 형사적 법정모욕(criminal contempt of court)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밝히라는 이유개진명령을 발했다. (법원의 일정한 명령에 불응하면 법정모욕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법정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판사가 피고에게 명령에 불응한 이유를 밝히라는 명령을 한다. 이 명령을 이유개진명령(order to show cause)이라고 한다. 그 이유가 정당한 경우에 법정모욕죄의 처벌을 면제한다-역자 주). 이러한 사건들은 곧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뉴욕과 워싱턴에서는 7 월 15 일과 16 일간에만 신청인이 대배심의 증인소환에 불응하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기사가 적어도 7 개 이상 보도되었다.

신청인은 이유개진명령서상의 소환일자에 법원으로 출두하여, 대배심에서 증언을 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거부되었다. 법정모욕죄에 대한재판이 시작되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신청인의 처가 신청인의 증인소환장상의 출두일자 당시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소환되었는데 그녀가 증언대에서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자 신청인의 법정모욕혐의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다. 그는 소련의 간첩망에 관한 대배심의 조사에 협조할 것을 조건으로 1 년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3 년간의 보호관찰(probation)에 처해졌다. 신문들은 법정모욕죄 재판절차와 신청인의 유죄인정 및 그 재판결과 등을 자세히 보도했다. 신청인이 대배심에 출두하지 않은 날로부터 판결을 받은 날까지의 6 주간 뉴욕과 워싱턴에서 전부 합쳐 15 개의 신문기사가 이 사건들을 언급하거나 토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의 돌풍은 신청인에 대한 판결 이후 잠잠해졌고, 그 후 신청인은 대체적으로 그가 대배심의 소환영장을 받기 전 상태의 사생활로 돌아가는데 성공했다. 신청인이 간첩혐의로 기소된 적은 결코 없었다.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공무원은 수정헌법 제 1 조와 제 14 조 때문에 그의 공적 활동에 관한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에 관하여 그 서술이 현실적 악의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그 현안적 악의라는 개념을 정의한 바 있다(376 U.S. 254, 84 S. Ct. 710, 11 L. Ed. 24 686, 1964). 3 년 후 법원은 New York Times 사건의 원칙을 공적 인물에까지 확장했다(Curtis Publishing Co. v. Butts, 388 U.S. 130, 87 S. Ct. 1975, 18 L. Ed. 2d 1094). 그러나 Gertz v. Robert Welch, Inc. 사건(418 U.S. 323, 94 S. Ct. 2997, 41 L. Ed. 24 789)에서 우리는 위 원칙에 의한 보호를 일반 개인(private individual)이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까지 확장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Gertz 사건에서 우리는 New York Times 사건의 원칙을 공적 인물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첫째로 우리는 공적 인물들은 효과적인 자구책을 강구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명예훼손적 진술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덜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들은 대개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에의 접근기회를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로 하여금 토론을 통하여 명예훼손적 진술의 허위성과 오류를 밝히고, 이를 반박할 수 있게 한다. 둘째로 더 중요한 것은 공적 인물들은 공무원과 같이 명예훼손적 허위사실로 인하여 더 많은 손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스스로 자신들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보호가치가 적다는 규범적 배려이다. 우리는 수정헌법 제 1 조의 적용에 있어서 어떤 인물이 공적 인물로 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밝혔다.

「이러한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사건에 있어서 특별히 현저한 역할(role of especial prominence in the affairs of society)을 떠맡았다. 어떤 사람들은 상당한 설득력 있는 권력과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공적 인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공적 인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문제된 쟁점의 해결에 영향을 가하려고 특정한 공공 논쟁(public controversies)의 최전방에 스스로 나선 사람들인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Time, Inc. v. Firestone, 42 U.S. 448, 96S. Ct. 958, L. Ed. 2d154, 1976).

피신청인이나 하급법원들은 신청인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공적 인물로 간주될 정도의 설득력 있는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신청인은 대배심의 소환을 받기 전까지는 철저한 사생활을 영위하였고, 판결선고를 받은 뒤에도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지위로 되돌아갔다. 법정모욕으로 인한 재판의 결과, 또는 소련간첩망에 대한 조사에의 관련으로 인하여 그가 일반적 명성이나 악명을 얻고, 사회적 사건에 있어서 특별히 현저한 역할을 떠맡은 바는 없다. 피신청인들의 주장과 하급법원들의 판결원들의 판결이유는 그 대신 신청인이 공적 인물의 두 번째 범주-문제된 쟁점의 해결에 영향을 가하려고 특정한 공공 분쟁의 최전방에 스스로 나선 사람들-에 해당하고, 따라서 신청인은 1940 년대 및 1950 년대의 소련간첩망과의 관련 또는 개입에 대한 제한적 범위에 대한 논평에 있어서 공적 인물이 된다는 것이다. 하급법원들은 모두 신청인의 대배심에의 출두불응 및 신청인에 대한 법정모욕 재판이 공적 인물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결정적이라고 인정하였다.

지방법원은 신청인이 대배심에 출두하지 않고 스스로 법정모욕죄로 소환 당함으로써, 관심과 논평을 초래하고, 그의 간첩망과의 관계를 알고자 하는 대중의 흥미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명백히 공공연한 성질의 논쟁(controversy of a decidedly public nature)에 개입하게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비슷하게 항소법원도 신청인이 대배심의 소환에 불응함으로써 「신청인은 소련간첩망의 조사에 관한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한가운데에 스스로 발걸음을 내디뎠고, 결국 자신의 자발적 행동에 의하여 간첩망 조사에 관련한 대중의 의문점에 대한 관심과 논평을 자초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는 신청인이 그러한 제한적 목적을 위한 공적 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피신청인과 하급법원들의 견해에 찬성하지 않는다. 첫째로, 다툼이 없는 사실만 보더라도 미국 내의 소련의 간첩행위에 관한 공공의 논쟁에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나섰다」('voluntarily thrust' or injected himself)는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결론은 정당화될 수 없다. 신청인은 그 논쟁에 타의적으로 끌려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 정부가 그 조사과정에서 그를 추적했다.

신청인은 대배심의 소환에 불응했고, 이는 그에 따른 법정모욕 재판과 더불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그의 행동이 세상의 이목을 끌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대배심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써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Gertz 사건에 있어서 우리는 변호사가 집중적인 언론의 관심을 끌 것이 분명한 사건을 자발적으로 수임하더라도 공적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우리는 명예훼손의 원인이 된 특정한 사건에 개인이 개입한 행위의 성질과 정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Gertz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는 형사소추에 참여하거나 언론과 그 소송에 관하여 토론한 바 없고, 오직 의뢰인개인을 위한 변호를 하였을 뿐이다. 이와 비슷하게, 신청인은 이 사건을 언론과 토론한 바 없고, 법정모욕죄 혐의에 대한 자신의 방어에 필요한 정도에서만 이에 개입했을 뿐이다. 소련간첩망 조사와 관련하여 설령 어떤 공공의 논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사소한 역할 밖에 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우리는 단순히 법정모욕죄로 소환되었다는 것만으로 그가 소련간첩망조사에 대한 논평을 위한 목적 안에서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견해를 채택하지 않는다. 신청인의 대 배심에의 출두불응이 「뉴스거리」(newsworthy)였음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써는 공적 인물 여부의 쟁점에 관하여 결론을 낼 수는 없다. 일반 개인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 사건에 개입되거나 관련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자동적으로 공적 인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공공의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면 New York Times 사건의 원칙이 일반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Rosenbloom v. Metro Media, Inc. 사건(403 U.S. 29, 91S. Ct. 1811. 29L. Ed. 2d. 296, 1971, 본지 통권 11 호 133 면 참조)의 의견을 재정립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Gertz 사건과 Firestone 사건에서 그러한 논리를 파기한 바 있지만, 여기서 이를 다시 거부한다. 명예훼손사건의 피고가 New York Times

사건의 엄청난 원칙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뉴스거리감이었다는 것(newsworthiness) 이상을 입증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신청인이 특정한 문제의 해결에 영향을 가할 목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공공문제의 해결에 있어 특별히 현저한 역할을 한 바 없다. 그가 대배심의 소환에 불응한 것을 일반의 논평을 초래하거나 또는 일정한 쟁점에 관하여 일반대중에게 영향을 가할 목적으로 관심을 끌기 위하여 한 계산된 행동으로는 결코 볼 수 없다. 그가 자신에게 유리하고 조사에 불리한 대중의 감정을 유발하려고 한 적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법정모욕 재판을 조사나 기소과정에 있어서 사용된 방법에 관한 공공연한 논쟁을 유발하기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법정모욕재판을 자초하는 경우가 아니다. 오히려 신청인이 대배심에 출두하지 않은 것은 그의 나쁜 건강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그는 곧바로 증언을 하겠다고 제의했고 그 제의가 거절된 다음 처벌받았다. 신청인이 출두에 불응한 것이 공공연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영향을 가하려고 한 것이었거나 또는 실제로 영향을 가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요컨대 우리는 신청인이 자기 이름의 보호에 관한 이익을 조금이라도 포기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로 하여금 피신청인들이 더 나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그의 유죄판결에 관한 제한된 범위의 쟁점에 대한 논평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공적 인물이 된다는 이론을 거부하게 한다. 우리는 Times, Inc. v. Firestone 사건에서 비슷한 주장을 채택하기를 거부했다. 그 사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판시 했다.

「어떤 소송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또는 그 소송을 위한 제한된 목적 내에서 '공적 인물'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피신청인과 같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제방법을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국가나 타인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그들 의사에 반하여 법정에 끌려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러한 개인들이 법정에 끌려들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않았더라면 명예훼손법리에 의하여 그들에게 부여될 보호를 실질적으로 상실해야 할 이유는 거의 없다. 사법절차에 대한 정확한 보도에 대한 공공의 이익은 Cox Broadcasting Co. v. Cohn 사건(420 U.S. 469, 955. Ct. 1029, 43L. Ed. 24328)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수정헌법 제 1 조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부정확하고 명예훼손적 보도에 관하여 우리는 Gertz 사건이 일정한 형태의 과실을 요구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이익을 위한 적절한 안전판을 마련하고, 실수에 대하여 관용할 수 있는 한계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가 정당하다고 보며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반대로 결론을 내린다면 유죄판결 받은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누구나 멋대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마구잡이 철」 (open season)을 열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

마샬(Marshall) 대법원판사가 동조한 블랙먼(Blackmun) 대법원판사의 보충의견

나는 이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신청인이 공적 인물이 아니라는 데 찬성한다. 법원은 공적 인물이 되기 위하여서는 「문제된 쟁점의 해결에 영향을 가할 목적으로」 논쟁에 나서야 할 것이 필요한데, 신청인은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자발적인 행동을 한 바 없다는 이유에 의해 위 결론을 내리고 있다. 환언하면 법원은 어떤 사람이 특정 견해를 선전하기 위하여 문자 그대로 또는 비유적으로 「연단에 오를」 때에만 제한된 범위의 공적 인물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우리 앞에 놓인 사실들에 대하여 그렇게 제한적인 공적 인물에 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설사 신청인이 1958년 간첩 사건에 관련되었을 당시 공적 인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1974년 피신청인이 「KGB」를 출간하였을 때는 이미 그는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 나는 그 사이의 16년이라는 시간의 경과가 신청인이 원래 공적 인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는가 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없이 만든다는 점에서 위 결론에만 동조한다.

Gertz v. Robert Welch, Inc. 사건에서 이 법원은 어떤 사람이 「특정한 공공논쟁에 자발적으로 나서거나 끌려들어 갈 때 제한된 범위의 쟁점들에 있어서 공적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의 논리는 공적 인물은 사생활에만 남아 있는 사람들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채널에의 접근기회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의도적으로 「더 신랄하고 공공연한 비판의 위험부담을 감수」 하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위와 같은 두 가지의 공적 인물의 특성을 가지는가를 결정함에 있어 시간의 경과가 중요하다고 믿는다. 첫째로 문제된 사건과 명예훼손 사이의 시간의 경과가 명예를 훼손당한 자의 반박수단에의 접근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간첩사건에 대한 보도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신청인은 그가 소련간첩이라는 혐의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언론사에의 접근기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1974년 책을 발행하였을 당시 신청인이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없다. 둘째로, 시간의 경과를 공적 인물이라고 할 사람이 충분히 감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공공연한 비판의 위험부담(risk of public scrutiny)」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신청인은 1958년에 대배심의 증인소환에 불응하면서 그의 행동이 언론기관의 비판적인 논평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법정모욕재판 후에는 대체로 사생활로 돌아가는데 성공했다 1958년 신청인이 공공연한 비판의 위험부담을 감수하였다고 확신한 추론은 그 후 16년 동안의 익명성을 되찾으려는 그의 의식적인 노력에 비추어 부정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논쟁사건에 관한 같은 시대의 보도에 있어서는 공적 인물로 될 수 있지만, 같은 사건에 관한 역사적 정석에 있어서는 공적 인물이 될 수 없다는 의미도 된다. 결과적으로 역사가들을 명예훼손으로 책임지게 될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결과가 수정헌법 제 1 조의 가치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역사적 분석이 당대 사건의 보도보다 결코 덜 중요하다 할 수 없지만, 역사가들의 활동조건은 언론인의 경우와 다르다. 마감시간에 쫓기는 기자가 그의 취재원의 정확성에 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문적 분위기에서 저술하는 역사가들은 자기주장의 정확성을 조사해 볼 시간과 기회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나의 결론은 신청인의 간첩사건 개입으로부터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명예훼손적 출판에 이르기까지의 16년간이라는 세월의 흐름은 신청인이 예전에 가렸을 수도 있는 어떠한 공적 인물로서의 특성도 모두 지워버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신청인은 1974년에는 분명히 일반 개인이기 때문에, 그가 1958년에 공적 인물이었는가 하는 더 복잡한 문제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견해가 옳다고 하는 Brenannan 대법원판사의 반대의견은 지면관계상 생략.